

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1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장철민 · 허영
허종식 · 이용우 · 김주영
윤후덕 · 박민규 · 박홍배
한민수 · 이주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,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%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.

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하였음.

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, 중소형조선소,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).

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환경친화적 기자재”란 해양오염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기자재로서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자재를 말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기자재 생산자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제9조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우선 참여
2.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경우 필요한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우선 구매
3.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홍보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기자재 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